



문의·신청 1544-3388  
(한국노인인력개발원)

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 
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가  
가능합니다.

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 
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.1만원까지  
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.

**\*전화 신청**

- 전용센터(1523)
- 이동통신사 고객센터(114)

**\*방문 신청**

- 이동통신사 대리점
- 주민센터



새희망, 행복의 발견  
기초연금

기초연금 상담

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
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(읍·면사무소)



만 65세 이상의 행복  
그 이상을 채우다, 기초연금!

기초연금  
받으세요



## 만 65세가 되신 어르신께

국가와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 
거룩한 마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.

올해 4월부터는 부모님께  
조금 더 힘이 되어드리고자  
작년보다 더 오를 기초연금을 드립니다.  
기초연금과 함께 부모님의 노후가  
더욱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.

혹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교통편이 불편해  
방문신청이 힘드신가요?

걱정하지 마세요.  
국번 없이 1355(국민연금공단)에 전화하셔서  
**‘찾아뵙는 서비스’** 신청하시면  
저희가 직접 찾아 뵙고  
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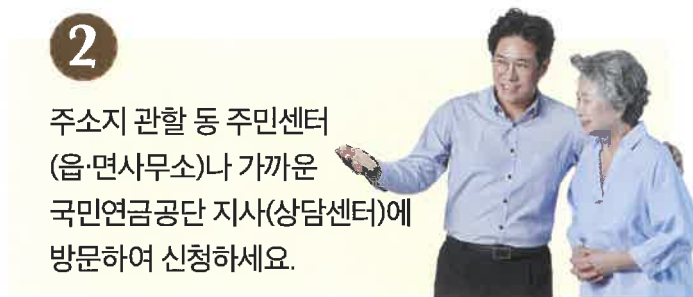


## 어떻게 받나요?

만 65세 되는 어르신은  
생일이 있는 달(주민등록 기준)의 전달부터  
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
**1**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1355)에  
전화하여 신청방법이나  
구비서류 등에 대한  
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.



**2**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
(읍·면사무소)나 가까운  
국민연금공단 지사(상담센터)에  
방문하여 신청하세요.



**3** 신청이 접수되면 각 시·군·구에서  
조사를 통해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,  
어르신들께도 개별적으로 알려 드립니다.

###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함께 신청하세요

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**‘수급희망자 이력관리’**를  
함께 신청하세요.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 
탈락했다더라도 어르신들의 소득·재산 변동내역과  
매년 조정되는 선정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 
기초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께  
다시 신청하시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
## 누가 받나요?

###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%

어르신(가구)의 소득인정액이  
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

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 
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 
제외될 수 있습니다. (연금일시금 수급자 포함)



2019년  
선정기준액



\* 소득인정액: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

## 얼마나 받나요?

###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%~70%



### 소득하위 20%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

